

## 해지환급금 예시

월납(기분형), 40세 남자,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20만원, 10년납, 이율: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매월 변동, 단위: 만원미만 절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가정 (연단위 복리 2.5%)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 만원	204 만원	85.3%	206 만원	86.0%
3년	720 만원	661 만원	91.8%	674 만원	93.6%
5년	1,200 만원	1,129 만원	94.1%	1,166 만원	97.1%
7년	1,680 만원	1,602 만원	95.3%	1,682 만원	100.1%
10년	2,400 만원	2,347 만원	97.8%	2,524 만원	105.2%
20년	2,400 만원	2,485 만원	103.5%	3,183 만원	132.6%

1.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이율과 계약제결비용을 차감하여 이보다 남았던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공시이율 기준입니다.
  - 207년 12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납입과정 제1~3회 계약에 따른 현재(207년) 평균공시이율은 3.0%이며, 상기 예시금액은 평균공시이율 최대 예대가산(공시이율 상한에 의해 발생)을 예시한 것입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 공시이율을 정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에 매월 변동에 따라 계약이 종료자산이액률과 서금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을 하며, 매월 납부된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여 예대 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황금들판 NH연금보험

| 무배당 | \_1701

## 보험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항목에는 보험성명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성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말일 의무의 중요성
  - 계약직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전일일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맞게 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사실의 사실성판정에 반드시 본인(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기법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3. 청약일별 청약지급
  - 계약자는 보험조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일 후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년특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연보유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4. 간계약에 대한 안내
  - 보험료 금액은 보험부담액으로, 간계약본인명의 보험료 지출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5. 3회 기본기부 (물품보증금지급 관련)
  -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 보험금 수령시 미정액, 익관 중유내용 미ש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 합니다.
-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준에 관한 안내
  - 주계약 보험료에는 정한 보험료율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다만, 특이율은 계약자지급금및해지환급금을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주계약의 적률부분 적용(물품보증)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액률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 7. 보험계약자 예금보호제도에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시자 보호되며, 보호 내용은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1. 방카시링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안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를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준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무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무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제작: 마케팅팀 2017.01.02 준법심사필 준법 201612-091



판매사

보험사

NH농협생명

2017년 1월 개정

# 황금들판 NH연금보험

| 무배당 | \_1701

미리 준비하여  
넉넉한 노후

## 황금들판 NH연금보험

- ✓ 비과세 혜택과 함께 누리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식(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ccm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원칙 | 한국소비자원

- 2. 세제혜택
  - 보험계약자보통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차소득세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우발적 재해를 대비 위험분담과 자금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총액에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3. 보험계약 전함에 대한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에 개설되거나 보험계약인상과 유사 보장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보험사실내용에 대한 안내
  - 가입(차신)보험에 대해 금융회사(나 분사)행위(인)이 있을 경우 농협생명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ile.co.kr)로 연락주시던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농협생명의 자립결과에이(가)있기있으면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www.klia.or.kr)에 인된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문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서에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상품을 할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이에서 상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고객센터: www.nhile.co.kr (당시전화번호)
    - 보험상품 비교 공식: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5.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결과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황금들판 NH연금보험 | 무배당 | 1701

인생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준비 필요자금

**3억  
5,000**만원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깊어진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더 일찍,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생활비 준비여부

**84%**

최저생활비도 마련 못했다



“당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준비하셨나요?”

부족한 노후준비, 일찍 준비하면  
부담은 줄고 여유로운 노후는  
길어집니다.

## 행복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황금빛 노후가 펼쳐집니다

황금들판NH연금보험 | 무배당 | 1701과 함께  
여유 가득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 상품특징



보험차익  
비과세상품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폭넓은 가입나이상품  
0세~최대 75세

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은 가족이 가입 가능한 연금상품입니다.



유연한  
자금운용상품 (관련요건 충족시)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시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 없음)



연금개시 후  
목돈활용 가능

행복실계자금을 활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최대 50% 이내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월납에 한함)

10년 이상 유지시 계약일부 2년 동안 '공시이율 + 1%'를 적립이율로 적용  
(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 (월납에 한함)

기본보험료	4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할인 또는 추가적립액	40만원 초과금액의 <b>0.8%</b>	4,800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b>0.9%</b>	22,800원 + 300만원 초과금액의 <b>1.0%</b>

※ 월납(기본형)을 선택하면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월납(가산형)을 선택한 경우는 고액계약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 연금지급 예시

월납(기본형), 40세 남성,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20만원, 10년납, 이율 : 연단위 복리, 공시이율 : 매월 변동, 단위 : 만원미만 절사

		최저보증이율 가정	공시이율 2.5% 가정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2,485 만원	3,183 만원
중신연금	개인연금형	10년 보증형 매년 87 만원	매년 144 만원
		20년 보증형 매년 85 만원	매년 141 만원
		30년 보증형 매년 80 만원	매년 134 만원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매년 68 만원	매년 120 만원
		10년 보증형 매년 71 만원	매년 123 만원
		20년 보증형 매년 71 만원	매년 123 만원
조기 집중연금	집중배수 2배	조기집중기간(20년) 매년 103 만원	매년 165 만원
		조기집중기간 이후 매년 51 만원	매년 82 만원
	집중배수 4배	조기집중기간(20년) 매년 116 만원	매년 180 만원
		조기집중기간 이후 매년 29 만원	매년 45 만원
확정기간 연금	확정기간 5년 매년 501 만원	매년 665 만원	
	확정기간 10년 매년 255 만원	매년 353 만원	
	확정기간 15년 매년 173 만원	매년 249 만원	
	확정기간 20년 매년 132 만원	매년 198 만원	
	확정기간 30년 매년 91 만원	매년 147 만원	
상속연금	생존시 매년 18 만원	매년 77 만원	
	사망시 2,466 만원	3,105 만원	

\*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1. 계약자적립금이던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차개선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며, 중도인출이나 생활자금자급인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합니다.
  2. 상기 예시된 금액은 최저보증이율과 현재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이 유지됨을 가정하여 계산한 계약자적립금 및 제자년도 연금 연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상기 금액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은 매월 일예 회사가 운용자산이율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2.5%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입니다.)
  4.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 동일)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으로 합니다.
  5. 중신연금(부부연금형)의 연금연액 예시금액은 실제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중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차이가 10세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위의 예시기준은 배우자에게 37세 기준입니다)
  6. 중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 I)형과 자유설계연금 II)형에서 중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과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 IV)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 중 하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중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하여 비교제가 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구성

주계약	+	제도성특약
일시납, 월납(기본형 / 가산형)		지정대리 청구서비스특약

## 가입안내

상품종류	• 일시납, 월납(기본형/가산형)												
연금지급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지급기간 : 10년~40년, 100세</li> <li>•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20년보증지급 ※ 조기집중배수(2~5배) 및 조기집중기간(5~20년) 선택가능</li> <li>•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li> <li>• 상속연금(개인연금형)</li> <li>• 자유설계연금(I / II / III / IV 형) ※ 중신연금, 조기집중연금, 확정기간연금,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li> </ul> <p>※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중신연금형태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중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중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차이가 10세 이내인 경우만 가입 가능합니다.</p>												
연금개시나이	45세 ~ 80세 ※ 중신연금(부부연금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경우도 연금개시당시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지급주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												
보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개시 전 보호기간 : 계약일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li> <li>• 연금개시 후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기간연금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li> <li>- 중신연금 / 조기집중연금 / 상속연금 / 자유설계연금 (I), (II), (III), (IV)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li> </ul> </li> </ul>												
납입기간	일시납, 단기납(5년납 ~ 30년납), 전기납(15년납 이상) ※ 단기 및 전기납의 경우 납입주는 월납으로 합니다.												
가입나이	<table border="1"> <thead> <tr> <th>납입기간</th> <th>가입나이</th> <th>최소 기본보험료</th> <th>연금개시전 최소 보호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일시납</td> <td>0세 ~ 75세</td> <td>1,000만원</td> <td>5년</td> </tr> <tr> <td>최소 기본보험료</td> <td>5년납 이상</td> <td>0세 ~ 65세</td> <td>12만원</td> </tr> </tbody> </table> <p>※ 기본보험료 가입단위 : 일시납(1000만원), 월납(2만원) ※ 월액 계약의 1구차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100만원(1구차, 10만원-2구차)</p>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 기본보험료	연금개시전 최소 보호기간	일시납	0세 ~ 75세	1,000만원	5년	최소 기본보험료	5년납 이상	0세 ~ 65세	12만원
납입기간	가입나이	최소 기본보험료	연금개시전 최소 보호기간										
일시납	0세 ~ 75세	1,000만원	5년										
최소 기본보험료	5년납 이상	0세 ~ 65세	12만원										
최저보증이율	가입 후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의 적립이율을 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1.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
2.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연금개시 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애 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장애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만)	1,000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중계료(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구좌담)

# 연금개시 후

10년~40년, 100세 보장지급

직립액

보통지급

생존연금

종신

연금개시 전 보정

연금지급개시

종신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분연금형)

20년 보통지급

직립액

보통지급

생존연금

종신

연금개시 전 보정

연금지급개시

종신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기간과 집중배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조기집중기간: 연금액 x 조기 집중배수  
-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확정기간: 5, 10, 15, 20, 30년

직립액

확정기간연금

종신

연금개시 전 보정

연금지급개시

확정기간(5, 10, 15, 20, 30년) 선택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직립액

생존연금

종신

연금개시 전 보정

연금지급개시

종신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1-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사망시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행복설계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행복설계자금 선택비율(0~50%)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상기 단일 연금형태 외에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자유수령연금형(Ⅰ/Ⅱ/Ⅲ/Ⅳ형)보다 다양한 연금수령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 참조)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추가납입

납입시기	계약 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연금개시나이 - 3세] 계약해당일 까지(수시납입)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한도: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단,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li> <li>1회 추가납입 가능한도(최저 10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납: 기본보험료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의 '인출금액' 합계</li> <li>월 납: [(기본보험료 x 가입률 경과율)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까지의 '인출금액' 합계</li> </ul> </li> </ul> <p>※ '인출금액' 합계란: 이미 중도인출과 생활자금자동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합계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p>

# 중도인출

인출가능 기간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인출횟수	<p>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인출 당시 해지한금급 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p> <p>※ 다만 중도인출 후 최저 해지한금급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의 인출금액 합계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p> <p>※ 최저 해지한금급: 보험가입금액의 10%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중 작은 금액</p> <p>보험가입금액: [일시납] 기본보험료 + [월납] 기본보험료 x 보험료납입기간(최대 10년) x 12</p>
인출수수료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일시중지제도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유효한 월납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중인 계약에 한해 기본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보장계약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개비용의 합계)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중도인출 등으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 일시중지제도

- 최대 3회까지 연금수령 일시중지 신청 가능합니다.(종신연금, 조기집중연금, 확정기간연금에 한함)
- 계약자와 연금수령자가 같은 계약에 한하여 신청기간 동안 연금수령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일시중지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연금수령 일시중지 종료로 신청한 경우 연금수령자가 선택한 횟수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금(이자포함)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자금 자동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연금개시 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5년이 경과된 경우)
  -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한금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금 인출에 따라 '저축성보험차입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생활자금인출 서비스의 중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